

클럽활동정지에 관한 질문 및 관심사

- a. 클럽이 미납금을 완불하여도 클럽재조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가?

클럽활동정지에서 해제될 때에는 재조직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. 하지만 클럽임원이 클럽이 클럽활동정지로부터 해제된 지 30일 이내 회원현황 보고를 해야 한다. 그리고 계속하여 신임클럽임원 보고서 (PU-101)와 월별회원보고서 (WMMR/MMR)를 적시에 국제본부로 제출하도록 한다.

- b. 클럽이 미납금의 일부를 청산할 때 클럽활동정지로부터 해제될 수 있는가?

미납금을 완납할 때에만 클럽활동정지로부터 해제될 수 있다.

- c. 클럽활동정지에 처했을 때에도 회원을 퇴회 시킬 수 있는가? 퇴회했을 경우 언제 보고할 수 있는가?

클럽활동정지에 처했을 동안 회원 입회 또는 퇴회 시킬 수 없다. 일단 클럽이 클럽활동정지로부터 해제될 때 퇴회 회원을 보고할 수 있다.

- d. 클럽활동정지에 처했을 동안 회비를 감면해 주는가?

감면해 주지 않는다. 회원 각자가 회비를 지불할 책임을 진다.

- e. 클럽이 활동정지로부터 해제되면 회원들의 회비를 다시 클럽으로 청구하는가? 아니면 신입회원의 회비만 청구하는가?

클럽활동정지로부터 해제되면 신입회원에게 회비를 청구한다. 기존 회원들에게는 클럽이 활동정지에 처했을 동안 지불하지 못한 회비도 청구한다.

- f. 클럽회장에게 클럽활동정지 해제통보는 어떻게 하는가?

이 메일이나 우편으로 통보한다. 해제 통보와 함께 회원명단을 발송한다. 이 메일 주소가 본부로 보고된 회장에게 즉시 이 메일로 통보한다.

- g. 클럽활동정지 해제통보는 지구총재에게도 하는가?

클럽이 활동정지에 처하거나 해산될 때 제일 먼저 지구총재에게 통보한다.

상기에 관련 질문이 있으면 회비청구과 (membershipbilling@lionsclubs.org) 로 연락하도록 한다.